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정성호·민병덕·백승아

박희승 · 장종태 · 홍기원

염태영 · 송옥주 · 황 희

이병진 · 윤종군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,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.

그러나 최근 '해병대원 순직사건'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,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타 수사 기관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·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을 지휘·감독하게 함.

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·감독 시 서면 에 의한 지휘·감독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단에 대한 독립보장 원칙 과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 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의 내용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군사경찰 수사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함(안 제5조제1항제3호).
- 나. 군사경찰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·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6항 신설).
- 다.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·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,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·감독하도록 함(안 제5조의2, 제5조의3 신설).
- 라.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지휘·감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화하고, 군사 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(안 제5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3호 중 "수사"를 "수사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군사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지휘·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조의2(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)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를 일 반적으로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5조의3(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·감독)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 경찰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구체적인 사건에 관 하여는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5조의4(지휘·감독의 원칙) ①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·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,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·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. 다만,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

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지휘·감독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도 지휘·감독한 내용을 24시간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·감독을 받은 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,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	제5조(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
회·감독) ① 군사경찰은 군사	회·감독) ①
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	
대의 장의 지휘·감독 하에 다	
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군사법원법」 제44조제1호	3
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	
예방·제지 및 <u>수사</u>	<u>수사(재판권이 군사</u>
	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
	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
	<u>함한다)</u>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군사경찰은 구체적인 사건
	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지
	<u>휘·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</u>
	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
	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국방부장관의 지휘・감
	독)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
	<u>무를 일반적으로 지휘·감독한</u>

<신 설>

<신 설>

다. 다만,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의3(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 ·감독)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를 일반적으 로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구체 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군 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 만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의4(지휘·감독의 원칙) ①
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구체적
사건에 대한 지휘·감독은 그
목적과 내용, 이유가 기재되고
지휘·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
면으로 한다. 다만,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
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
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
·감독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
에도 지휘·감독한 내용을 24
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
으로 작성하여 지휘·감독을
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

장,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 찰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 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